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0- 142호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 나. 중증장애인의 지원범위를 확대 강화하며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1급, 2급 장애인과 다른 종류의 장애가 등급에 상관없이 하나 이상 중복된 3급 장애인(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으로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제3급의 장애 등급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장애유형에 따른 1급, 2급 장애인과 지적장애 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1급, 2급 장애인과 다른 종류의 장애가 등급에 상관없이 하나 이상 중복된 3급 장애인(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으로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책무) ① -----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제49조(장애수당) ☐ 장애인연금법 - 제2조(정의)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9조(장애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하나의 장애의 종류에 대하여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다른 종류의 장애가 등급에 상관없이 하나 이상 중복된 사람(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으로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